

요율제도와 연관된 방재서비스



차 경철
(보험개발원 상무이사)

1. 머리말

보험이란 모집집단의 손실을 담보하는 보상기능을 전제로 성립되는 경제제도이다. 따라서 보험사업자가 모집집단의 손실을 예방, 경감시키기 위하여 수행하는 방재역할은 국가나 기업, 각 개인이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자 이행하는 방재활동과 더불어 보험이 갖는 사회적인 기능으로 보아 그 비중이 매우 크다 하겠다.

우리나라는 경제의 고도성장과 산업의 발전으로 대규모공장 등 기업물건이 다수 출현되고 있으며 각종 설비나 시설 및 신소재의 개발과 위험물질의 사용증가로 인하여 화재위험요인이 다양화되고 잠재위험 또한 거대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화재보험이 갖는 방재수행기능에 있어서 손해보험업계의 역할과 그 현황을 조명하여 보고 나아가 바를 몇가지 밝혀보고자 한다.

2. 업계의 역할과 실태

가. 한국화재보험협회와 부설 방재시험소

우선 손해보험업계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방재활동으로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손보업계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전문방재기관인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주요 업무중 방재전담업무를 들 수 있다.

화보협회는 동법에 의거해 가입하는 특수건물을 중심으로 화재관련시설에 대한 위험을 진단하는 안전점검을 실시, 위험실태 및 위험경감방법을 제공하고 시설개선을 유도하는 방재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소방시설에 대한 개량과 시설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직접적인 방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특수건물의 10년간 평균손해율은 25%를 시험, 동기간의 화재보험전체손실률 34% 보다 하회하고 있어 양질의 위험집단으로 인정되고 있음이 통계상으로도 입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급부로서 특수건물 할인제도를 활용, 업종별로 15%~30%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화보협회는 이러한 특수건물중심의 대 계약자 방재서비스 외에 국가기관에 대한 소화기기의 기증, 대 국민방화 의식 고취를 위한 각종 홍보활동, 방재조사연구결과의 작성제공, 방재기술관계자의 교육, 행정기관

에 화재예방에 관한 건의 등의 방재관련업무를 수행해 국가방재활동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화보협회는 또 1986년 4월11일 방재시험소를 개소, 약 130여종의 시험기재를 구비, 건축부재의 내화시험, 소방기계 적격시험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각종 재료의 안전도 시험을 행하고 있다.

동 시험소는 국립건설시험소, 해운항만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되어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국내시험기준인 KS 기준은 물론, 선진국의 시험기준인 UL, ISO, ASTM, BS, JIS 기준에 의한 시험도 완벽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되었다.

방재시험소는 업무영역확대 방안에 의한 일환으로 자체 인증기준을 마련, 성능시험조사는 물론이고 품질관리에 의한 공장(maker)심사를 실시하여 제품에 인증마크(FILK)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우량제품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방재시험소의 설립은 손보업계가 단순히 대 계약자 방재서비스 차원을 넘어 보다 실질적으로 국가방재활동에 참여하는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며 국가방재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근래에 설립된 관계로 시험물량의 확보 및 FILK인증제품의 확대 보급 등 자구적인 발전방안의 강구와 함께 해결하여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시험업무의 정상화를 위하여 손보업

기법을 도입해야



계의 관심과 지원이 요망되는 실정이라 하겠다.

나. 일반손해보험사의 방재업무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전문방재활동 외에 손해보험회사가 화재보험과 관련하여 수행하고 있는 방재업무의 종류로는 회사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1) 조사중심의 일반업무로서 인수물건에 대한 화재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위험개선을 유도하는 것과 이체시 사고현장을 조사하여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조언을 하고, 공장이나 빌딩 등 시공이전 계획단계에서 방재상의 문제점을 검토하며 또한, 보험료경감 방법을 제시하는 것.

2) 화재보험 소화설비할인규정에 의한 할인을 적용 업무

3) 위험분석, 적정요율산출 등 방재기술적인 검토를 요하는 RISK가 다양한 기업조건 중심의 보험설계 업무

4) 방재대책의 조사연구결과 발간, 사고원인분석 및 사례수집, 방재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등의 정보제공업무

이상 4가지 업무로 요약된다.

손해보험회사는 조직면에서 상기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로서 위험관리과나 부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사를 제외하고는 최근에 설치되었으므로 보다 효과적인 방재관련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위험관리의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가지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위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화재안전진단은 특수건물중심으로 한정되어

있고 손해보험사의 위험관리기능은 아직 정착되지 못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므로 앞으로의 방재업무에 있어서는 확충 개선하여야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화보험회사 원보사가 행하는 안전진단기준의 대부분은 관련 규모에 의한 것이므로 요율제도와 직접 결부된 진단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현행 화재보험요율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기인된 것으로 본다.

국문요율의 경우는 급별요율체계에 의존하므로 언더라이팅시 보험요율과 관련된 위험 check 항목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위험특성이 다양하고 개별화된 기업물건에 있어서는 적정요율산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계점에 직면하고 있다. 영문요율에서도 위험 check 항목이 제한된 면에 있어서는 동일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업물건에 대하여는 보다 다양한 위험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요율제도를 도입, 위험상태에 부합하는 적정요율산출을 기하고 보험기능에 좀더 접근한 방재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요율제도의 조속한 보완이 요청된다 하겠다. 선진국에서는 요율산출제도와 연관된 방재서비스 기법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테이프요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기업물건에 대하여는 특정할인율제도나 특수계약방식을 도입, 요율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기업형상

공물건에 대하여 요율산출표(Rating schedule) 또는 HPR(Highly protected Risk) 제도 등 개별요율산출제도에 의한 요율이 이용되고 있다.

손해보험회사는 계약물건의 안전진단 및 국가방재활동에 참여하는 직접적인 방재활동외에 담보위험의 확대 및 보험금 지급방법을 개선하는 등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방재활동의 간접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보험서비스면에서의 주요기능이 있다.

화재보험에서 국문보통약관상의 주담보위험은 화재(낙뢰) 이외에, 주택물건의 경우 폭발(파열) 위험이 추가되어 있고, 특수건물은 특약에 의거 풍수재 및 항공기 위험을 보험료의 추가 부담없이 담보하고 있다.

보상방법에 있어서는 공장물건이 비례보상제를, 기타 물건에서는 80% co-insurance 적용 실손보상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산출기준은 시가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담보위험에서 특수건물에 거대한 실위험의 가능성이 높은 풍수재위험이 추가담보되고, 보상방법에 있어서 최근 주택물건에만 적용되던 80% co-insurance 조항이 일반 및 창고물건에 확대 시행된 것은 특기할만하다.

화재보험에서 화재이외의 폭발(파열) 손해는 물론, 제한적이기는 하나 비용손해, 상해, 배상책임 등의 손해를 추가보험료 부담없이 보통약

관상에 담보하는 담보위험을 package 화 하고, 보상방법에 있어서도 co-insurance 적용범위를 확대한다든가 재조달가액(신가) 기준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하는 등 계약자에게 보다 양질의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이런 면에서 현재의 상품은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개선방안

손해보험회사가 행하는 방재활동은 계약자에 대한 보험서비스를 제공, 계약자 need에 부응하고 보험수요를 진작시킴과 동시에 모집집단의 손해를 안정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업이 건전하게 유지된다는 점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불가결한 기능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방재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업계의 인식전환을 촉구하며 화재보험업계의 방재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앞서 지적한 실정에 건주어 다음 몇가지를 개선해가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기업물건에 있어 화재위험진단과 연계된 요율산출제도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개별요율산출제도, 성과요율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는 개별 risk화한 기업물건의 위험실태에 부합하는

적정요율산출을 기하고, 화재보험의 구조적 문제점인 이중요율구조의 탈피, 요율의 경직성 해소 등의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손해보험회사는 위험관리기능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전담부서의 업무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화재보험의 전문성, 다양성을 고려할 때 기술적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확보는 절대적이며 관련업무량의 증대 및 질적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선 전담부서를 독립 부서로 확충하는 등 조직개편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담보위험의 점진적인 확대 및 보험금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등 보험상품개발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품개선은 요율수준조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현 요율과 약관의 이원화된 업무를 일원화하도록 하는 업계 업무영역의 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넷째, 손보업계가 공동출연하여 설립한 방재시험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시험결과를 활용하여 시간내화제도의 도입 등 요율규정이나 제도의 과학화를 실현할 수 있겠으며, 방재시험소에서 인증한 제품을 시설한 계약물건에 대하여는 위험경감측면에서 보험료할인제도를 도입, 우수한 건축자재나 소방기기의 보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